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9. 4. 22. (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황 규 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-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개정이유

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 운영,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
 - (현행)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
 - (변경)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
- 기본계획 수립 사항 내용 추가(안 제4조)
-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용어변경(안 제7조)
 - (현행) 간이수영시설 → (변경) 이동식수영장
-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-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2조)

5. 검토의견

- 현재 충북은 2016년 초등 4~6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초등 2학년까지 운영되며, 2020년에 초등학생 전 학년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할 기반시설과 인력부족, 체계화되지 않은 생존수영 교육프로그램, 이동식수영장을 포함한 생존수영교육 시설관리 체계 등이 보완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,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,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개정 내용으로 조례명을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”에서 “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”로 변경한 것은 본 조례의 목적과 의미를 더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,
-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내용에 생존수영교육 교육과정과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시설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·보완하고, 안 제5조에 매년 생존수영교육 시설과 각급 학교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은 생존수영 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·감독을 강화시켜 내실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생존수영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10조와 생존수영 전문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안 제11조의 신설은 일반수영교육과 구분되는 생존수영교육의 특징과 전문성을 높이고, 부족한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종합적으로, 본 조례안은 개정의 취지와 조문 구성 및 내용면에서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,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